

감정평가서

건명	파산채무자 이봉순 소유물건(2025타경71424)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상민
감정서번호	L2025-03-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천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건세

감정평가액	칠천오백팔십이만칠천원정 (₩75,827,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상민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파산채무자 이봉순 (2025타경7142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31	2025.03.31	2025.04.0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985	토지	1,985	38,200	75,827,000
		이	하	여	백	
	합계				₩75,82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과 대상물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이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소재 “산유저수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대상 토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2024.01.01 개별공시지가 (원/㎡)
1	가평읍 산유리 산252-3	임야	1,985	자연림	보전관리	9,930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대상 토지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3월 31일로 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이 감정평가의 실지조사 기간은 2025년 03월 31일이며 그 내용은 사전조사 및 공부발급과 현장조사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대상토지에 대한 이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사항

- 1)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 2)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자료에 의거하였습니다.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5. 01. 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가평읍 산유리 산128	임야	314	자연림	보전관리	맹지	사다리 급경사	8,52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경기도 가평군 보전관리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02.28	0.103	2025년 02월 까지의 누계
2025.02.01 ~ 2025.02.28	0.060	2025년 02월분
2025.01.01 ~ 2025.03.31	0.169 (1.00169배)	$(1 + 0.00103) \times (1 + 0.00060 \times 31/28)$ ≒ 1.00169

※ 2025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2025년 0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지역요인 비교치: 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임도의 상태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접근조건	인근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임목의 반출 용이성	임목 반출의 용이성 및 시장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방위, 형상
	고저, 표고 등	고저(경사지 등), 표고, 경사의 위치 및 굴곡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임상 등	임상, 조림, 자연림, 수종, 수령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및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고압선, 분묘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토지와 개별요인 비교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계
1	A	1.00	1.00	1.00	1.05	1.00	1.00	1.050
검토 의견	표준지 대비 방위 및 고저(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바)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본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대법원 판례(1993.06.22 선고 92누19521 등) 등에 의거하여 본건 인근지역의 유사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정상적인 지가수준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사례기준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격 = 사례가격 × 지가변동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산 식 : -----

비교표준지기준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격 = 공시지가 × 지가변동률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지역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 거래사례

(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단위:천원)	거래시점
#1	산유리 산236-*	임야	4,854	보전관리	자연림	51,503	250,000	2021.11.03
#2	산유리 산204-**	임야	661	보전관리	자연림	37,821	25,000	2021.07.14

㉡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DB)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3	산유리 산44-**	임야	보전관리	조림	43,000	담보	2023.10.06
#4	산유리 산198-*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24,000	경매	2024.11.06
#5	산유리 산129-**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22,000	경매	2022.03.21

(3)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보전관지역 내 임야	위치 및 개별요인에 따라 : 30,000원/㎡ ~ 40,000원/㎡ 내외 수준
------------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3을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와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적용 대상지
A	#3	1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근거

표준지 A : 사례 #3 (2025.03.31 기준)

구분	사례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원/㎡)						
사례 대비 표준지 가격	43,000	1.00	1.01004	1.00	0.837	36,352	4.259
표준지 가격	8,520	-	1.00169	-	-	8,534	
사정보정 : 적정한 사례로서 보정요인 없음. (1.00) 시점수정 : (지가변동률 : 가평군 보전관리지역, 2023.10.06 ~ 2025.03.31) : 1.01004 지역요인비교 : 비교표준지는 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개별 요인 비교	가로조건	표준지는 접근도로 상대 등에서 열세함					0.90
	접근조건	표준지는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0.95
	환경조건	대등함					1.00
	획지조건	표준지는 방위 등에서 열세함					0.98
	행정적조건	대등함					1.00
	기타조건	대등함					1.00
	누 계						0.837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표준지 가격과 사례 대비 표준지 가격의 격차율 및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교표준지 가격과 시가수준과의 차이가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기호	격차율	보정치
A	4.259	4.26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8,520	1.00169	1.00	1.050	4.26	38,174	38,2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산출

[가] 평가개요

본건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매매시점부터 기준시점 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 환경, 이용상태 및 기타 가치형성 요인 등 개별요인의 비교 과정을 통하여 본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의 선정

(1) 선정기준

대상토지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사례#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2) 비교사례의 선정

『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실거래 자료』

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천원)	자료 출처	거래시점 (사용승인)
#1	산유리 산236-*	임야	4,854	보전관리 (자연림)	51,503	250,000	실거래 자료	2021.11.03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산정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시장사정에 밝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 그런 사정이 없는 적정 가격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절차를 말하며, 상기 거래사례 기호#1은 매매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보정요인은 없습니다.(1.00)

(라) 시점수정

기호	기간	지가변동율(%)	비고
#1	2021.11.03 ~ 2025.03.31	3.443 (1.03443)	가평군 보전관리지역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바) 개별요인 비교(기호 1/#1)

비교사례 기호#1과 대상토지 기호 1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누계
본건	비교사례							
기호 1	#1	0.80	0.85	1.00	1.03	1.03	1.00	0.721
		대상토지는 비교사례 #1과 비교할 때 토지의 형상 등에서 우세하고 사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대상토지가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하나 접근 도로의 상태,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구분	사례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1	51,503	1.03443	1.00	0.721	38,412	38,4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기호 1	38,200원 / m ²	38,400원 / m ²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가] 결정의견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 매매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지가와 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밖의 요인의 보정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를 통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액

구분		면적 (m ²)	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기호 1	1,985	38,200	75,827,000	-
합계		1,985	-	75,827,000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252-3	임야	보전관리지역	1,985	1,985	38,200	75,827,000	
합 계								₩75,827,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소재 "산유저수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남하향 완경사의 임야이며, 지상에 활엽수 등이 자생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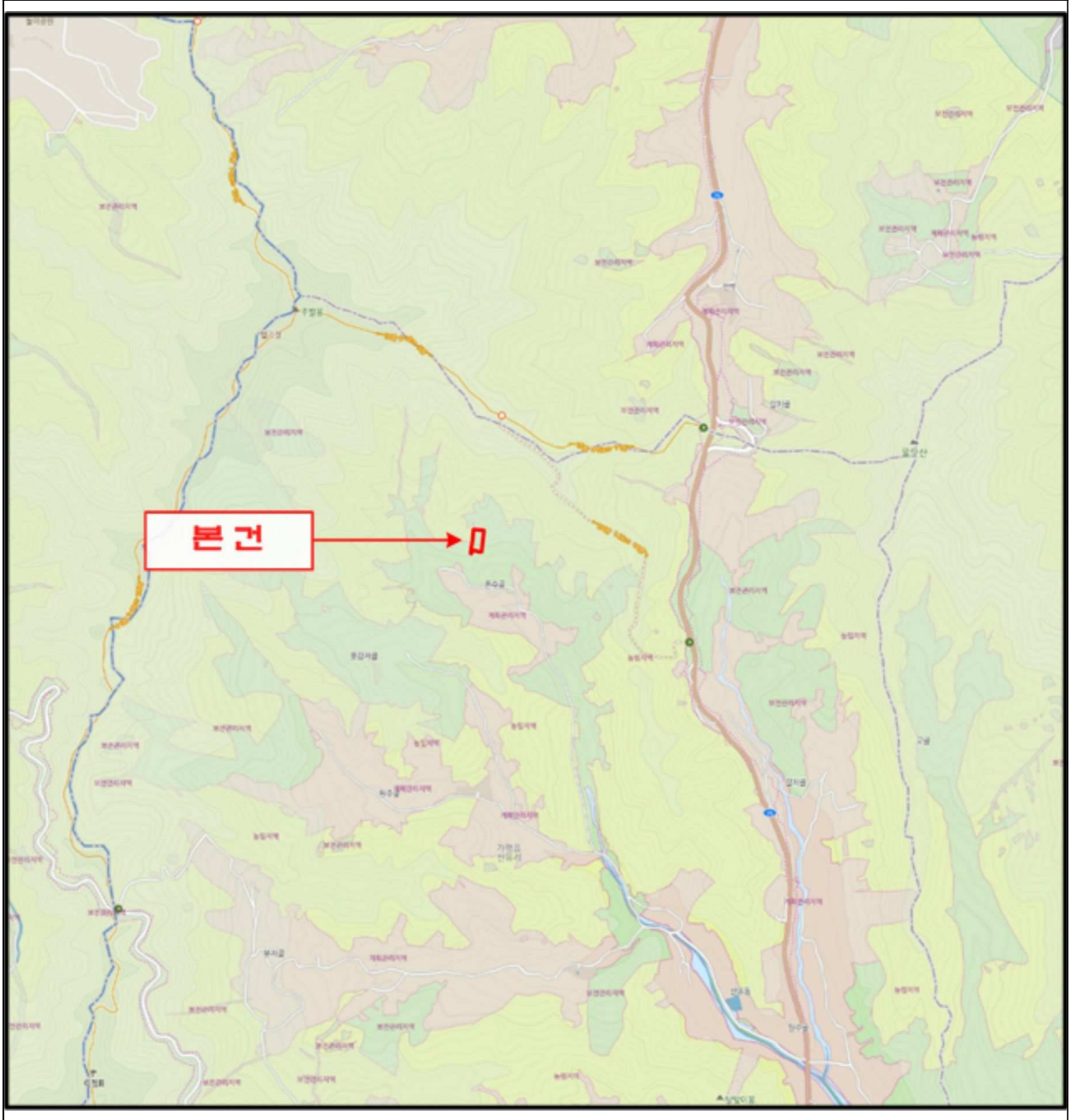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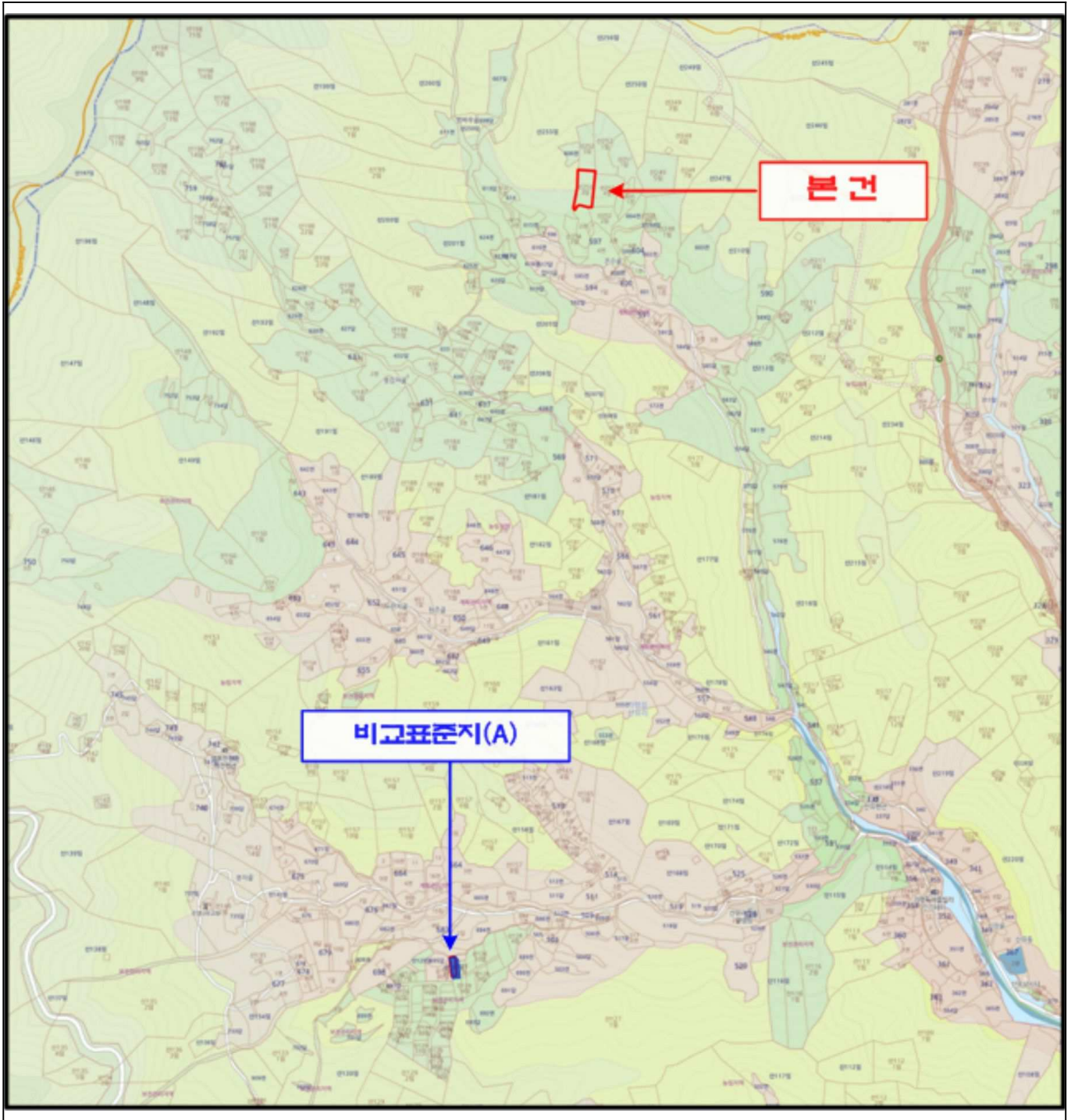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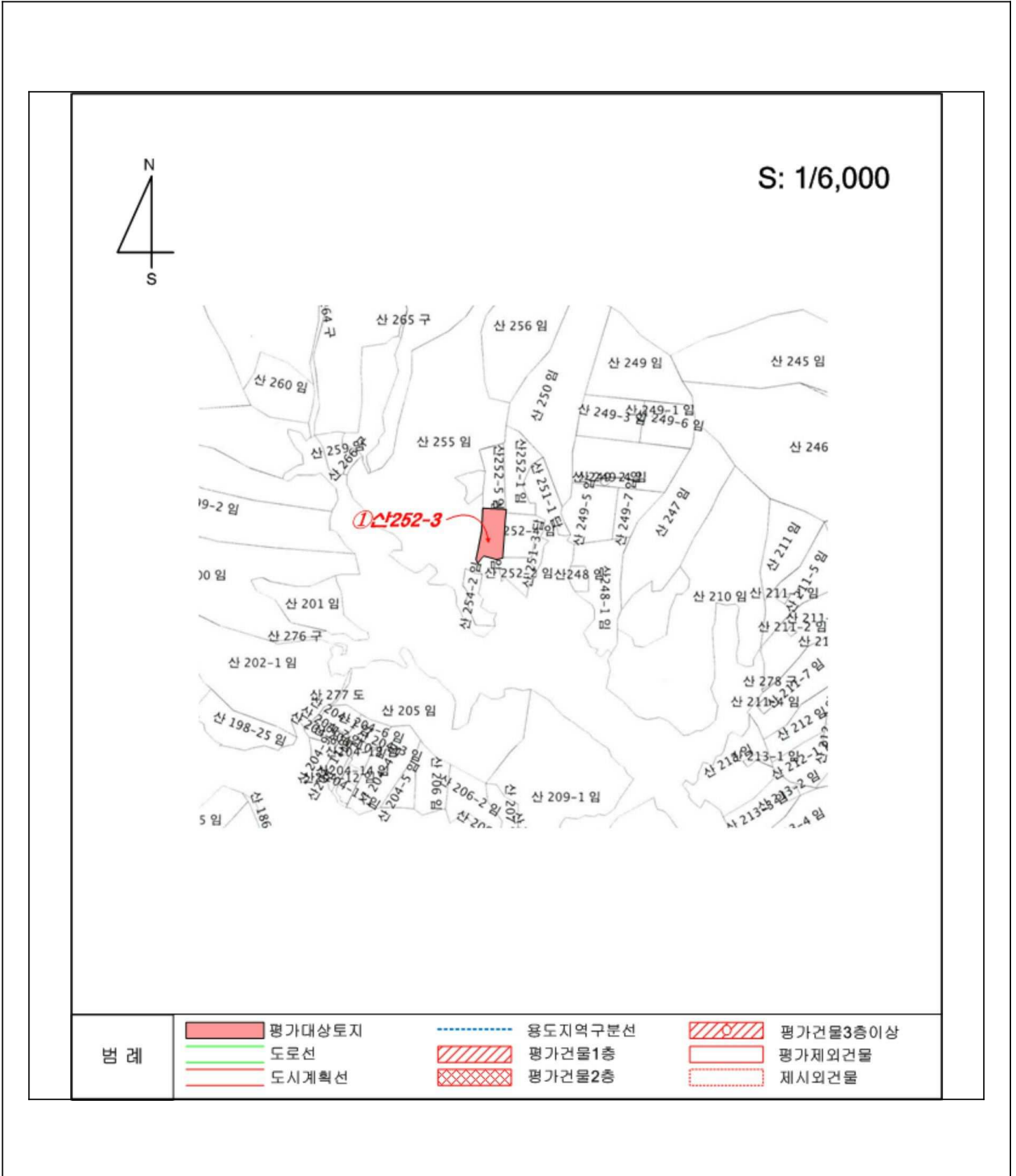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252-3



지 적 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